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발명진흥법」에서 특허권 포기에 대한 규정 신설(제10조제4항)
  -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 (국유특허권의 포기)
- 관리부서의 특허보유 필요성 및 수익성 등 검토를 위한 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“포기”근거 마련

## 3. 주요내용

- 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근거 마련(안 제2조)
  - 특허권의 “포기” 조항 신설
-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특허권 포기방법 규정(안 제9조)
  -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“특허권 포기” 조항 신설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(안 제2조 등)

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발명진흥법」 및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에 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근거를 마련하고, 안 제9조에 특허권 포기방법을 직무발명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다만, 「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」이 2010년 7월 26일에 개정되었음에도 이제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붙 임 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